

|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-|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2428 | <b>【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】<br/>검 토 보 고 서</b> |
|----------|------|--|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6. 10.(화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| 전년도말<br>조성액④   | 당 해 연 도 증 감 액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당해연도말<br>조성액<br>⑤=④+⑥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계<br>⑥=⑦-⑧       | 조 성 액⑦        | 사 용 액⑧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23,105,516,660 | △ 15,055,755,470 | 7,396,344,830 | 22,452,100,300 | 8,049,761,190         |

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### 5. 검토의견: 없음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